

의안번호	2219199
의 퇴 인	나경원의원
회 답 일	2026.9.3.
추 계 번 호	26D2806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19조제1항 (선거소청)	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청의 제기기간을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서 당선일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로 하고, 중대한 위법사유와 관련하여 국회의 국정조사, 감사원의 감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진행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함	재량규정
2	안 제224조 (선거무효의 판결 등)	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사유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,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하도록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19조제1항 (선거소청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24조 (선거무효의 판결 등)	

2. 상세 사유

□ 선거소청 제기기간의 연장(안 제219조제1항)

-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효력에 관한 선거소청의 제기기간을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고, 중대한 위법사유와 관련하여 국회의 국정조사, 감사원의 감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진행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청 제기가 가능한 기간을 확대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현행법은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·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소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(「공직선거법」 제219조제1항)
 - 「공직선거법」 제27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와 소청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
 - 개정안에 따라 소청 제기가 가능한 기간이 확대되고,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소청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선거소청의 접수·처리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제기될 선거소청의 건수와 소청 1건당 평균 처리 경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참고로,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(2022. 6. 1. 실시)에서는 선거소청 45건이 제기되었으며, 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소청 제기 건수 11건보다 34건 증가한 것임(중앙선거관리위원회, 「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」, 2022. 12.)

□ 선거무효 사유의 신설 및 입증책임의 전환(안 제224조)

- 개정안은 선거무효 사유를 신설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증책임을 부여하여 재선거 실시 건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사유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중단되거나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

고,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선거를 무효로 하도록 규정

- 「공직선거법」 제1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고, 같은 법 제197조제1항에 따라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선거를 의무적으로 실시
- 개정안에 따라 선거무효의 결정 또는 판결의 증가로 재선거 실시 건수가 증가하여 선거관리경비 등에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다만, 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사유에 따른 중대한 위법·하자의 발생 건수, 그에 따른 선거무효 결정·판결의 건수와 무효로 되는 선거의 범위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선거구·투표구의 수 및 선거인 수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개정안은 ‘중대한 위법’ 및 ‘중대한 하자’의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무효로 인정될 범위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(2026. 6. 3. 실시)의 선거인수는 44,649,908명임(행정안전부 보도자료, 2026. 5. 23.)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